

연무동 220-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조합설립인가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20-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03월 20일

수 원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
나. 명칭 : 연무동 220-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

사업시행구역 위치	사업시행구역 면적
장안구 연무동 220, 220-1, 220-2, 220-3, 220-4, 220-5, 220-6, 220-7, 220-8, 220-9, 220-11, 220-12, 220-13, 220-14, 220-15, 220-16, 220-17, 220-18, 220-19, 220-20	4,591.4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가. 착 수 예 정 일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이내

나. 준 공 예 정 일 : 2030년 4월

※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가. 명칭 : 연무동 220-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지중근)

나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66번길 11-3, 207호(연무동, 유천프라자)

5.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

가. 사업시행구역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사업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-	연무동 220-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	연무동 220-4번지 외 19필지	4,591.4	최초결정

나. 사업시행구역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사업명	위치	면적(㎡)	결정사유
-	연무동 220-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	연무동 220-4번지 외 19필지	4,591.4	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재

6. 기타 관계도서: 게재생략
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(<https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정비과(☎031-228-339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 고시도

(붙임)

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
- 연무동 220-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-



본 도면은 수원시 고시 제2025-40호(2025.03.17.)로
결정된 사항에 한하여 유효함

수원시 고시 제2025 - 40호

2025년 3월 20일

범례



소관부서	도시정비과	담당자 직.성명	주무관 김예리	전화번호	031-228-3395
-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